

실무에서 발생하는 대표이사의 산업안전·보건 역할에 관한 오해



김수현

법무법인 율촌 공인노무사

한신대를 졸업해 제24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했다. 해인건설
팅그룹과 해인노무법인, 노무법인 위맥에서 활동했다. 2021년에
는 고려대 노동대학원 노사관계학 석사를 수료했고 현재 법무법
인 율촌에서 활동 중이다.

1. 들어가며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의 안전보건 활동뿐만 아니라 기업 내 전사적인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리더십 및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표이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안전·보건분야의 인력배치, 예산편성 및 집행, 시설 및 장비의 투자 등 안전보건조치의 실효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2022. 1. 27.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기업의 대표이사 사업 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일 것이다.

이렇듯 최근 노동시장에서 산업안전(재해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강화된 법률과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에 비해 아직까지 기업 내 대표이사 등 경영진들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제는 실무자들의 안전보

건 활동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와 역할을 준수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 방법을 강구하며 체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건설업·제조업 외의 업종은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낮은 인식과 관심으로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제 의무들에 대해서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 이에 대표이사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정 사항을 중심으로 실무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오해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안전보건계획수립 사항 (산안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2. 오해① CSO가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에 보고·승인을 받아도 된다.

2020. 1. 16.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전면개정되면서 2021. 1. 1.부터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수립 의무가 시행됐다. 산안법은 근로자를 사용해 사업을 행하는 자인 사업주(법인 경우 법인 그 자체이고, 개인 기업인 경우 경영자 개인을 말함)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 및 규제를 하고 있는 데 반해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에 대해서는 산안법에서 명시적으로 대표이사를 특정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산안법 제14조).

이와 관련해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CSO(Chief Safety Officer, 안전보건최고책임자)나 실무자들이 안전보건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업무수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위 법률의 의무이행 주체는 대표이사이므로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보건문제를 인식하고 안전보건계획에 관여·파악 및 최종 결재를 하며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안전보건계획수립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일부 연동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해야 할 것이다.

3. 오해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중 대표이사를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산안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이때, 사용자위원의 경우 해당 사업의 대표자를 포함해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산안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만일 대표이사가 상주하지 않는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해 관리하는 사람)를 사업의 대표자로 볼 수 있다(산안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대표이사가 상주하는 본사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CSO, 본부장, 부장 등으로만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잦고, 또 실제로 사업의 대표자가 부재한 채로 사용자위원을 구성하는 기업들도 있다.

산안법에서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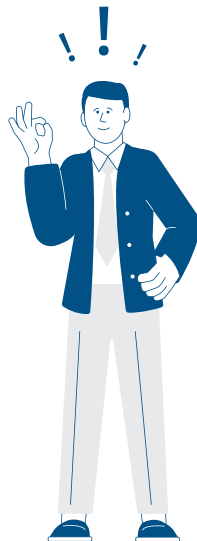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으므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CSO, 본부장, 부장 등은 안전보건부서의 장으로서 보고, 대표이사가 상주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의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대표이사로 볼 수 있을 것이다(산재예방지원과-955, 2021. 11. 12.).

4. 오해③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CSO 등 기업 내 직무상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는 자다.

실무에서 산안법 제15조 및 제62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에 대해 단순히 안전보건업무만을 수행하는 자로서 지휘·감독하는 직위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상위자로 보고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 본부장, 부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각각 따로 선임하는 경우도 잦다.



하지만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산안법에서 명시돼 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 안전보건교육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권한·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사항 등을 실질적으로 총괄해 관리해야 하는 직위다.

또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도급사업으로서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산업안전과-3165, 2019. 7. 17.)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위험성평가, 작업중지,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산안법 제62조 제1항). 즉,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모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누가 돼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산안법에서는 '사업

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해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해 법정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산안법 제15조). 법에서 명시적으로 대표이사라고 칭하진 않았지만 고용노동부는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라 함은 당해 사업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최종관리자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된다고 보

고 있다(산재예방정책과-706, 2019. 2. 14., 산재예방정책과-1032, 2020. 3. 2., 산재예방정책과-5739, 2018. 12. 10. 등 다수).

다만, 이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체계는 사업장 단위로 운영되므로 대표이사·사장·임원·공장장·CSO 등 명칭에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 선임될 수 있을 것이다(산안68320-296, 2001. 7. 11., 산재예방정책과-5739, 2018. 12. 10.). **노법**

